DEDICA
—DEDICATED LAWYERS—

외국인 투자자금 계좌 개설 안내
통달 38/2026/TT-NHNN 기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

근거: 통달 38/2026/TT-NHNN (통달 06/2019/TT-NHNN 대체)

www.dedica-law.com · david@dedica-law.com · 039 969 0012

DEDICA
—DEDICATED LAWYERS—

배경

2026년 8월 18일부터 직접투자 자금 계좌의 명칭이 변경되고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6년 8월 18일, 베트남 국가은행의 통달 제38/2026/TT-NHNN호가 공식 시행되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활동의 외환 관리에 관한 통달 제06/2019/TT-NHNN호를 대체합니다(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주목할 점 중 하나는, 국가은행이 이전에 발행한 통달들에서 사용하던 “직접투자 자금 계좌”와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 계좌”라는 용어를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금 계좌”로 통일한 것입니다(제18조 제5항). 아울러 통달의 규율 범위가 확대되어, 베트남 국제금융센터에서 베트남 내 그 밖의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활동도 포함됩니다(제1조 제1항). 이러한 변화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특히 베트남에서 경제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 거래를 하기 전에, 투자자금 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절차를 점검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통달 38/2026/TT-NHNN 제1조, 제18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적용 대상

투자자금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대상은?

1. 외국인 투자 경제조직

- 외국인 투자자 또는 구성 기업이 투자법 규정에 따라 설립한 경제조직;
- 외국인 투자자 또는 구성 기업이 정관자본의 50% 초과를 보유하는 외국인 투자 경제조직;
-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PPP 프로젝트 기업.

2. BCC 계약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구성 기업

3. PPP 프로젝트 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PPP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외국인 투자자

4. 석유·가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

베트남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외국 계약 당사자와 체결한 석유·가스 계약 또는 석유·가스 합의문서상의 외국인 투자자인 계약자.

법적 근거: 통달 38/2026/TT-NHNN 제6조

DEDICA
—DEDICATED LAWYERS—

계좌 개설 원칙

투자자별로 몇 개의 계좌를, 어디에 개설할 수 있나요?

계좌 개설 의무 대상자는 **동일한 1개** 인가 은행에서 외화 투자자금 계좌 **1개** 및/또는 베트남 동화 투자자금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외화로 출자하려는 경우, 같은 인가 은행에서 각 외화별로 별도 계좌 **1개**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BCC 계약, 석유·가스 계약 또는 여러 PPP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 및 구성 기업은 계약별 또는 PPP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투자자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여러 PPP 프로젝트나 여러 BCC 계약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금 흐름을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통달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계약별,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송금할 때마다 기업은 은행의 요구에 따라 송금액과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2항, 통달 38/2026/TT-NHNN

DEDICA
—DEDICATED LAWYERS—

특별한 경우

IRC 취득 전에 기업을 설립한 경우: 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사용 범위가 제한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등록증(IRC)의 발급·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경제조직을 설립한 경우에도, 그 경제조직은 1개 인가 은행에 외화 투자자금 계좌 1개 및/또는 베트남 동화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으나, 해당 계좌는 **다음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정관자본 및 계좌 잔액에 대한 이자의 수령, (ii) 베트남 내 투자 준비 활동을 위한 적법한 비용의 지급, (iii) IRC가 발급·변경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게 출자금 반환.
IRC가 발급·변경된 후에는 경제조직이 다른 외화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고, 이미 개설한 계좌를 통달 제8조, 제9조에 따른 모든 수입·지출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제도는 투자자가 투자등록증(IRC)을 기다리는 동안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기업에 필요한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계좌의 사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은행은 허용되는 세 가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송금 지시를 거절합니다. 관련 위험, 특히 90일 출자 기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투자자는 DEDICA의 글 「ERC를 먼저 신청한 경우, 아직 자본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Xin ERC trước, chưa mở được tài khoản vố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제5조 제3항, 제7조, 통달 38/2026/TT-NHNN

DEDICA
—DEDICATED LAWYERS—

절차

인가 은행에서 투자자금 계좌를 개설하는 5단계

단계	업무 내용	근거
1	**개설할 계좌 확정**: 조직은 같은 은행에서 외화 계좌 1개(출자에 사용하는 외화별로 계좌 1개) 및/또는 베트남 동화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IRC를 취득하기 전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 단계에서는 자금 수령, 투자 준비 비용 지급 및 출자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7조 제1항, 제3항, 통달 38/2026/TT-NHNN
2	**서류 준비 및 제출:** 기업은 통달 17/2024/TT-NHNN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 서류 준비가 끝나면 기업은 모든 서류를 인가 은행에 제출합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사 확인(합법화)과 번역을 거쳐야 합니다(권한 있는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12조; 제15조 제1항, 통달 17/2024/TT-NHNN (통달 25/2025/TT-NHNN으로 개정)
3	**은행의 검토 및 확인:** 은행은 적법성을 검토하고, 서류를 대조하며, 고객 정보를 확인합니다. 법적 대표자는 서류 및 생체정보 대조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통달 17/2024 제15조 제2항 b호 (통달 25/2025 제5조 제1항으로 개정)
4	**계좌 개설 및 이용 약정 체결:** 서류가 완비되고 유효하면 은행이 결제계좌 개설 및 이용 약정서 내용을 제공하며 기업이 서명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은 보완·완비를 요구하거나 사유를 밝혀 거절합니다.	제13조; 통달 17/2024 제15조 제3항 a호, b호
5	**계좌 개설 및 서류 보완:** 위 단계를 모두 마치면 은행이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번호, 계좌명(ERC상의 기업명 포함) 및 이용 개시일을 통지합니다. IRC, ERC가 발급 또는 변경된 후 기업은 이 서류들을 은행에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통달 17/2024 제15조 제4항; 통달 38/2026 제15조 제3항

DEDICA
—DEDICATED LAWYERS—

서류 체크리스트

투자자금 계좌 개설 시 준비할 서류

번호	서류	요건	근거
1	결제계좌 개설 및 이용 약정서	은행 양식에 따르며, 은행이 서류의 완비·유효성을 확인한 후 서명	통달 17/2024 제12조 1.a호, 제13조
2	ERC, IRC, 회사 정관, 출자·주식 매입 조건 충족 통지서, 전문 분야 허가증, PPP·BCC·석유·가스 계약(해당하는 경우)	원본, 공증 사본 또는 원본 지참 사본; 서류가 발급·개정·보완된 경우 기업은 은행에 보완 제출할 책임이 있음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개정·보충) 제12조 제1항 b호; 통달 38/2026 제4조 1., 제15조 제3항
3	대표이사(이사), 총괄회계책임자 임명 결정서(해당하는 경우)	원본 또는 공증 사본 제출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개정·보충) 제12조 제1항 b호
4	법적 대표자, 총괄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담당자의 신분증명서류; 조직의 법정대리인, 위임대리인(해당하는 경우) 및 실질적 소유자와 관련된 서류·자료	은행 대조용으로 공증 사본 또는 원본을 제공하며, 법적 대표자는 생체정보 대조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함	통달 17/2024 제12조 제2항, 제3항; 제15조 제2항 (통달 25/2025로 개정); 2022년 자금세탁방지법(개정·보충) 제12조 제1항 b호
5	은행별 개별 요구에 따른 추가 서류	은행은 고객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안내해야 함	통달 17/2024 제12조 5.

DEDICA
—DEDICATED LAWYERS—

계좌 변경 및 폐쇄

투자자금 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경우는?

계좌 개설 은행 변경

투자자금 계좌의 개설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은 다음 순서에 따라야 합니다:

1. 다른 인가 은행에 새 투자자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2. 기존 투자자금 계좌의 잔액 전부를 새 계좌로 이체합니다;
3. 기존 투자자금 계좌를 폐쇄합니다.

 유의사항: 새 계좌는 위 단계를 모두 마친 후에만 수입·지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계좌를 폐쇄해야 함

주식·출자금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더 이상 없는 경우; IRC가 발급·변경되지 않아 출자금을 반환한 경우; 해산, 파산, 영업 종료; 프로젝트 양도로 최초 등록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하로 낮아진 경우; 또는 기업이 상장 공개회사가 되거나 증권 거래 등록을 한 경우.

법적 근거: 제7조 제4항, 제5항, 통달 38/2026/TT-NHNN

계좌를 폐쇄한 후에도 주식·출자금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간접투자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 계좌를 통해 관련 수입·지출 거래를 합니다.

DEDICA
—DEDICATED LAWYERS—

법적 리스크

투자자금 계좌를 잘못 개설·폐쇄·사용하면 최대 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과태료 수준

시행령 340/2025/NĐ-CP 제27조 제4항 d호에 따르면, 외국인의 대(對)베트남 투자를 위해 베트남에서 계좌를 개설·폐쇄·사용하는 것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는 개인 기준 3,000만 동 이상 5,000만 동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시행령 제5조 제3항 a호에 따라 조직에 대한 과태료는 개인에 대한 과태료의 2배이므로, 조직의 경우 6,000만 동 이상 1억 동 이하입니다.

기업이 자주 위반하는 상황

실무상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위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투자자금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출자하는 경우(통달 38/2026/TT-NHNN 제4조 제4항 위반); (ii) 계약별·프로젝트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여러 BCC 계약 또는 PPP 프로젝트의 거래에 하나의 계좌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통달 38/2026/TT-NHNN 제7조 제2항 위반); (iii) 지분 양도 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하로 낮아졌음에도 투자자금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 경우(통달 38/2026/TT-NHNN 제7조 제5항 b호 위반). 위 행위는 앞서 언급한 수준의 행정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출자 및 계좌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투자자금 계좌의 개설·사용·변경·폐쇄가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팀이 항상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락하시면 심층적인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 | 상시 법률 자문 | 분쟁 해결
형사/범죄 | 인수합병(M&A) |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찌민시 쑤언호아 동 하이바쯩 거리 171번지
A&T 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자문을 받으세요.